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효율법으로 재탄생

산자부,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지정제 등 신설

에너지기본법 개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주요내용이 에너지기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에너지효율법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지난 1월 17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13호)'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에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지정제도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지정제도의 법적근거를 신설(안 제18조 및 제19조)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 촉진을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법적 근거(안 제20조 및 제21조)도 신설했다.

에너지절약형 건물의 보급확대를 위해 신축건물 에너지효율 등급의 법적 근거(안 제33조 및 제34조)도 마련했는데 산업자원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이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 고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냉·난방온도 제한기준의 근거도 신설(안 제35조)했다.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 에너지사용자의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제3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너지사용자는 제3자가 속한 구역의 집단에너지사업자와 협의하도록(안 제37조) 했으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량 신고 및 분석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도지사의 신고서 접수 업무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안 제71조제3항제5호)토록 했다.

또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사업의 지속 추진 및 확대를 위해 수요관리투자계획의 수정·보완 시행과 관련한 규제의

존속기한(10년)을 폐지(부칙)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신고유가 및 에너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책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앞장서는 에너지 공기업

- 풍력, 태양광으로 작년도 1만 8천가구가 연간 사용할 전력 등 생산·공급 -

한국전력 등 9개\* 에너지 공기업은 '06년도에 1,246억원을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투자, 발전설비 26.6MW(약 1만 8천가구가 1년간 사용할 전력\*\*)와 열공급설비 68Gcal/h를 설치·공급하여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6개 발전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발전설비 1MW당 생산 전력량은 약 680가구에 1년간 공급할 수 있는 전력임

※ 동 공기업들은 2005년 7월 정부와 「신재생에너지 자발적 개발공급협약 (Renewable Portfolio Agreement : RPA)」을 체결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1.1조원을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에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다.

동 협약에 따라 에너지 공기업들이 작년에 보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06년도에 정부가 지원하여 보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13.3MW)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금년에는 4,299억원을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56MW와 열공급설비 27Gcal/h를 보급하고, '08년에는 7,068 억원을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265MW, 열공급설비 12Gcal/h를 보급할 계획이다.

2006~2008년간 당초 협약보다 1,600억원이 증가한 총 1,26조원을 투자하여 총 348MW의 발전설비와 106Gcal/h의 열공급설비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공급될 전망이다.

## 에너지최저효율 미달 9개 제품 생산금지 17개 모델은 시정령 ... 산자부, 올해 집중관리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실시한 전기제품과 조명기기 등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품의 사후관리 점검 결과, 에너지 최저효율 기준에 미달한 전기냉방기 2종 등 모두 9개 품목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다고 1월 24일 밝혔다.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품의 사후관리 제도는 냉장고나 세탁

기, 조명기기 등 효율관리 기자재 제품에 표시된 에너지 효율성능과 시험기관에서 측정된 성능을 비교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해당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제도다.

이번 조사결과 최저소비효율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은 T사와 K사의 전기냉방기, S사와 N사 등의 형광램프, E사 등의 형광램프용 안정기 등 9개 품목이다.

산자부는 이 밖에도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전기냉동고, 형광램프 등 11개 제품과 허용오차를 초과한 2개 안정기 내장형 램프, 소비효율등급을 신고하지 않은 4개 안정기 내장형 램프모델에 대해 2월 말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기로 했다.

김학도 에너지관리팀 팀장은 “올해는 조명기기 분야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